

● 제267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동작아이존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6. 4. 25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동작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05
----------	------

제출년월일 : 2016년 4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105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다. 제출일자 : 2015년 4월 7일
- 라. 회부일자 : 2015년 4월 25일

## 2. 제안이유

- 가. 동작아이존은 정신보건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아동청소년 사회복귀시설로서,
- 나.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에게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및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동작아이존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상도3동 294-74

- 시설규모 : 대지 215m<sup>2</sup>, 건물 274,60m<sup>2</sup>(지하1층~지상2층)
- 준공일자 : 1975.08.12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만 6세이상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초등학생

####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16.07.01 ~ 2019.06.30)
- 위탁업무
  - 정서행동 장애아동을 위한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 정서행동 장애아동 검사 및 평가 프로그램 운영
  - 정서행동 장애아동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연계서비스 지원
  - 기타 서울시에서 추가로 서비스제공이 필요한 경우

- 소요예산 : 328백만원 (2016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 제15조(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09.7.1 ~ 2012.6.30 (3년,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 2차 : 2012.7.1 ~ 2014.6.30 (2년,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 3차 : 2014.7.1 ~ 2016.6.30 (2년,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직영으로 운영시 현재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는 시설 대체를 위해 추가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인력 · 장비 등 전문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함
- 지속적으로 변하는 의료환경 및 지역사회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다년간의 성공적 운영경험이 있는 민간시설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보건법 제15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나. 예산조치 : 328백만원(2016년 본예산)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운영 재계약을 위한 경영평가 및 적격자 심의결과 : 적정  
(보건정책과 2016.02.26.)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조직담당관 2016.03.21)

## 5. 검토의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가. 민간위탁(재계약) 추진 개요 및 경위

- 본 동의안은 동작아이존 민간위탁운영의 재계약에 대한 동의안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4차 계약을 앞두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sup>1)</sup>에 따라 해당 사무의 4차 재계약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상기의 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아동·청소년)정신질환자<sup>2)</sup>의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 사무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서행동 장애아동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아동 부모와 함께 참여) 운영
  - 정서행동장애아동 검사 및 평가 프로그램 운영
  - 정서행동장애아동 교육 및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정서행동장애아동 문화 및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생활교육을 통한 건전한 시민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이외 서울시가 필요로 하여 추가한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격심의 결과(보건의료정책과 2016.2.24.) “적정” 의견 및 지난 7년간 수탁경험이 있기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1.7.]

2) 「정신보건법」 제3조(정의)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 나.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정신보건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조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동작아이존의 민간위탁은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지난 2년간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집행부의 지도·점검이 3회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하였고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격심의 결과(보건의료정책과 2016.2.24.) “적정” 의견으로 나타나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정성 검토

- 해당 사무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기에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서비스의 공공성 및 안정성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이용료 감면 및 시민의 정신건강욕구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공공성을 지니고 있음.
- 시비로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종사자의 경력기간이 센터장을 제외하고 모두 2년 미만인 점은 고용안정성에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음.<sup>3)</sup>
- 한편, 심리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특히 아동·청소년기의 정서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동 서비스의 제

3)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고용 중임.

공은 민간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성과측정의 측면에서 지난 수탁기간 동안 심리검사를 활용 이용자의 개선된 정도를 수치화 하여 보고하고 있기에 성과측정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민간에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아동·청소년기 정서적 문제를 민간의 공급에만 맡겨두기엔 추후 사회적 비용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됨.

## 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정책적 검토

- 동작아이존의 이용자가 주로 겪는 문제는 ADHD<sup>4)</sup>로 아동·청소년기 대표적인 정서장애인 ADHD는 반항장애,品行장애와 같은 동반장애 외에도 불안, 우울과 같은 기분장애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sup>5)</sup>
- 소아정신과에서 주로 약물치료를 통해 이를 해결하지만 약물치료를 받은 아동의 약 50~80%가 대인관계 및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되고 있음.<sup>6)</sup> 이러한 이유로 민간의 소아정신과 등에서도 약물처방과 동시에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사회경제적 요인은 아동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

4) 유병률은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소아의 경우 3~7%로 나타나며 남아가 여아에 비하여 3배 정도 높은 유병률을 보임.

5) 이정립, 강경숙(2012) “ADHD의 특성, 정의의 변화 및 생활에의 영향” 한국아동심리학회지 7(1) 115-137.

6) Weiss & Hechtman(1993) *Hyperactive Children Grown Up*(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이정은, 김춘경(2000) “ADHD 아동을 위한 사회기술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적용연구” 놀이치료연구 4(2) 59-77 에서 재인용.



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ADHD를 포함한 정서장애의 발병 가능성이 높으며<sup>7)</sup> 경제적인 이유로 적기에 치료를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저소득(또는 차상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서비스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sup>8)</sup>

- 경제적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제공되는 심리치료(지원) 서비스와의 유사·중복 사업(바우처, 사회복지관의 심리지원 서비스 그 외)일 가능성이 있기에 검토해 보면 지원서비스는 대부분 경증의 심리적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점과는 달리 동작아이존의 경우 의학적 진단을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서비스라는 차이가 존재하여 동작아이존에서 제공하는 심리치료 서비스는 심리지원 서비스와 유사·중복적인 기능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프로그램들도 유사할 수 있으나 대부분 성인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과 시설운영의 필요성 존재.
- 이에 정책적으로 동작아이존의 사업진행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유사·중복사업에의 우려도 작은 것으로 판단함.
-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철학은 건강한 시민으로의 육성임. 동작아이존의 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기 심리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저소득, 차상위)를 해소하고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성장발달을 촉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로 판단함.

---

7) 김설연, 하지현, 황원숙, 유재학(2009) “지역 저소득층 아동의 우울증상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증상에서 사회경제적 요소의 관련성”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20(2) 76-81.

8) 일반시민에게는 민간의 서비스에 비해 낮은 이용료를 받고 저소득 또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이용료 감면